

보 도 자 료

수 신 :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제 목 : 유엔, 대한민국 정부에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 관련 우려 서한 전달
담 당 :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김형남

[보도자료]

* 주최단위 협의에 따라 조선미디어 계열 채널A, 뉴시스, 국민일보, 세계일보, 아시아경제의 보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유엔,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은 국제인권법 위반’

- 강제전역 조치 즉각 중단과 재발 방지, 책임자 조치 등 강력 촉구 -

- 2020. 07. 29. 유엔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에 기초한 폭력과 차별에 대항하는 보호에 관한 독립전문가’ (Victor Madrigal-Borloz), ‘모든 이의 달성 가능한 최상의 신체 및 정신 건강 수준을 누릴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Dainius Puras), ‘사생활의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Joseph Cannataci), ‘여성과 소녀 차별에 관한 실무위원회 위원장’ (Elizabeth Broderick)은 대한민국 정부 앞으로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에 관한 서한을 발송하였습니다. 이는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 41/18, 42/16, 37/2, 41/6에 따르는 권한입니다.
- 유엔은 대한민국 육군이 변 하사의 남성 성기 제거를 장애로 고려하였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였고, 성 다양성을 병리로 구분하는 것이 ‘국제질병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제11판’ 에 배치된다는 점, 변 하사의 전역 처분이 국제인권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 또한, 육군과 변 하사가 강제 전역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이 장기화될 경우, 변 하사의 직업안정성 뿐 아니라 생계를 위협에 빠뜨린다는 점에 우려를 전하였습니다.
- 이어 위와 같은 우려와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추가 질의를 전하고 60일 이내(2020.9.26.까지)의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답변이 확인되지 않은 관계로 2020. 9. 27. 자로 이 서한을 공개하였습니다.

□ 끝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인권법을 위반하여 변희수 하사에 대한 부당한 전역 조치를 고집하고 있다는 점에 즉각적 중단과 재발 방지를 위한 잠정 조치, 위반 사항에 책임이 있는 이들에 대한 조치를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 이 서한과 서한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답변, 조치 사항은 추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되는 통상의 보고서에도 담기게 됩니다. 국제적 망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제 인권 기준에 미달하는 반인권적 조치로 변희수 하사를 강제 전역시킨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제 사회의 엄중한 지적에 대해 반성하고 전향적 답변을 조속히 제출하기 바랍니다.

[붙임] 대한민국 정부에 보내는 유엔 특별절차 서한 (국문번역본, AL KOR 4/2020)

2020. 09. 29.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이하 총 21개 단체)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 군인권센터 /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
더불어민주당 성소수자위원회 준비모임 /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무지개예수 /
서강대학교 성소수자협의회 / 성소수자 부모모임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인권운동사랑방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 중앙대학교 자유인문캠프 / 참여연대 / 천주교인권위원회 /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평동 / 트랜스해방전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민우회 /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기초한 폭력과 차별에 대항하는 보호에 관한 독립전문가, 모든 이의 달성 가능한 최상의 신체 및 정신 건강 수준을 누릴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사생활의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여성과 소녀 차별에 관한 실무위원회의 관할

참조
AL KOR 4/2020

2020년 7월 29일

각하께,

우리,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기초한 폭력과 차별에 대항하는 보호에 관한 독립전문가, 모든 이의 달성 가능한 최상의 신체 및 정신 건강 수준을 누릴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사생활의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여성과 소녀 차별에 관한 실무위원회,는 인권이사회 결의안 41/18, 42/16, 37/2, 41/6에 따른 권한으로서 각하 앞으로 연락 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번 연락을 통해 각하의 정부가 우리가 접수한 다음 정보에 대해 주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 정보는 성 정체성 확인 수술을 받은 변희수 하사라는 한 군인의 전역에 관한 것입니다.

접수된 정보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미래의 군대 사관을 위한 고등학교를 마친 이후, 변희수는 대한민국 육군의 [부]사관으로서 2017년 3월 입대합니다. 심화되는 우울증 탓에 변 씨는 군 병원에 도움과 상담을 의뢰합니다. 그녀의 의사는 성확인치료를 권고하였고, 그녀는 2019년 5월 호르몬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7월 변 씨는 그녀의 부대에 성전환수술을 받고 싶다는 희망을 부대에 알렸습니다. 2019년 8월 그녀와 그녀의 부대는 수술 일정에 합의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그녀는 2019년 10월 해외[사적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녀는 의료적 치료를 위해 태국으로 떠난다는 사실을 그 신청서에서 설명했습니다. 2019년 10월 14일 육군 제5기갑여단은 해당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2019년 12월 23일 변 씨는 태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대한민국으로 귀국하여 국군수도통합병원에 입원하였고, 비뇨기과에서 의료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그녀의 부대와 상관들은 수술을 받겠다는 그녀의 결정에 지지[우호]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의 상관 중 한 명은 병원에 있는 그녀를 면회 가서 치료를 마친 후, 그녀가 원할 시, 타 부대나 부서로 재배치하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한 바 있습니다.

2019년 12월 26일 변 씨는 청주지방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상 법적 성별 정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 2월 10일 허가되었습니다.

2020년 1월 6일부터 10일 사이에 변 씨는 다음의 세 가지 위원회로부터 심사를 받습니다.

- 1월 6일: 의무조사위원회는 그녀의 신체적 혹은 심리적 “장애”의 정도와 퇴원 여부를 포함해 그녀의 계속치료 요구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위원회는 그녀의 경우가 양쪽 고환 결손(5급)과 음경 상실(5급)로 인해 「군인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령’) 제53조의 [별표2]에 따라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1월 9일: 국군수도통합병원의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직무상 상이[공상]를 입게 된 것이 아니라고 결정하였습니다.

- 1월 10일: 전역심사위원회는 그녀의 심신“장애”에 비추어 그녀가 현역으로서 복무하기에 여전히 적합한지 검토하기 시작하였고, 해당 장애가 있으므로 「군인사법」 제37조 제①항에 따라 육군에서 전역시키기로 하였습니다.

「군인사법」 제37조 제①항에 따르면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은 전역하게 됩니다. 시행규칙 제53조 제①항은 위의, 비전공상으로 발생한 심신장애의 정도를 결정하는, 기준을 제공합니다. 만약 시행규칙 제53조 제①항에 해당하는 자가 군에 남기를 희망하면, 1. 위법행위나 고의로 심신장애를 초래한 경우나 2. 해당 병과와 계급에서 요구되는 근무·훈련·작전 등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임무수행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속하여 복무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53조 제③항).

2020년 1월 21일 본 사건을 갖고 있던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긴급조치권을 발동하고, 육군본부에게 전역심사위원회를 인권위가 해당 사건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릴 때까지 3개월 간 보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렇지만 1월 22일 전역심사위원회는 변 씨의 계속복무 의사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전역시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위 위원회는 의무조사위원회의 검토를 바탕으로 남성 성기 상실이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녀의 경우 시행규칙 제53조 제③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위 위원회는 더 나아가서 이 결정은 다른 여성 군인들에 대한 “역차별”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여군이 되기 위한 과정이 남군의 경우보다 더 경쟁이 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같은 날, 변 씨의 전역처분이 집행되었습니다. 군 숙소에는 그녀의 개인 소지품이 상당수 있었으나, 부대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서, 육군은 그녀에게 곧장 군숙소가 아닌 사택으로 갈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보통, 군인을 전역시키는 결정은 3개월 내에서 집행되게 됩니다.¹

2월 18일 변 씨는 육군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전역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고자 심사를 신청하였습니다. 6월 29일 육군은 원 결정이 그녀의 성 정체성이 여성임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7월 3일 위 위원회는 본 소청을 기각하며 그녀에게 남성 성기가 결손한다는 사실이 「군인사법」 제37조 제①항의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제공된 정보의 정확성을 예단하고 싶지 않으나, 한국 육군이 변 씨의 남성 성기 제거가 그녀가 육군으로부터 전역하게 되는 「군인사법」 제37조 제①항의 신체적 및 정신적 “장애”의 근거가 된다고 고려하였을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합니다. 성 다양성(gender diversity)이 병리(pathology)라는 개념은 국제질병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제11판과 배치됩니다. 나아가 변 씨의 전역은 일할 권리와 성 정체성에 기초한 차별을 금지하는 국제인권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만약 육군과 그녀 사이의 분쟁이 지연될 경우 그녀가 군에서 장기복무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것이 단지 그녀의 직업안정성 뿐 아니라 생계를 더 큰 위험에 놓이게 한다는 점에서 우려를 전합니다.

위에 제기된 사실과 우려와 관련하여 본 서한에 첨부된 [부록] ‘국제인권법 참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은 위 의혹과 관련한 국제인권규범과 기준을 인용하였습니다.

우리의 책무로서, 인권이사회가 우리에게 부여한 권한에 따라 우리에게 포착된 모든 사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다음 사안에 대해 귀하의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¹ [역자주]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47조 제①항 법 제37조제1항제1호(심신장애전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역심사위원회가 전역을 의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역하고, …, 제②항 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서 전역일은 전역권자가 정한다.

1. 추가적 정보 그리고 위 의혹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전역심사위원회가 변 씨를 전역시키기로 결정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전역심사위원회가 인권위가 권고한 대로 변 씨의 심사과정을 보류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국제질병분류 제11판에 따라 한국 군 의료기관 및 국가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성 정체성 관련 건강을 재정의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성전환 및 다양한 성 정체성이 정신적 질환의 조건이 아니 됨을 보장하고 성별 불일치 진단이 성전환 사람들에게 성별 건강 치료에 접근할 수 있음을 보장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남성 성기의 제거가 “심신장애”로 분류되는 법적 근거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사생활의 권리 및 성 정체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전환 및 다양한 성의 군인들이 차별이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각하의 정부에서 제공한 성 다양성에 대하여 훈련[교육/연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60일 이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기한이 도과할 경우, 본 서한 및 각하의 정부로부터 접수한 그 어떤 답변이라도 연락보고(communications reporting) [누리망](#)을 통해 공개될 것입니다. 또한 나중에 이는 인권이사회에 제출되는 통상의 보고서를 통해서도 제공될 것입니다.

답변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제기된 위반을 중단하고 그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잠정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제기된 혐의점에 대한 조사가 그것이 정확하다고 지지[확인]하거나 시사할 시에는 제기된 위반 사항에 책임이 있는 그 어떠한 사람(들)이든지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확실히 [조치]해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각하께 우리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Victor Madrigal-Borloz

빅토르 마드리갈-보를로쓰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기초한 폭력과 차별에 대항하는 보호에 관한 독립전문가

Dainius Puras

다이뉴스 푸라스

모든 이의 달성 가능한 최상의 신체 및 정신 건강 수준을 누릴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Joseph Cannataci

조세프 칸나타치

사생활의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Elizabeth Broderick

엘리제베스 브로더릭

여성과 소녀 차별에 관한 실무위원회 위원장

[부록] 국제인권법 참조 Reference to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평등과 비차별 원칙은 법치와 인권을 이루는 근간의 일부이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와 제2조²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고,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으며,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이 원칙은 다른 인권조약에 의해서[도] 재확인된다. 여기에는 대한민국이 1990년 4월 10일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제2조 제①항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 제2조 제②항이 포함된다.

국제연합 조약기구의 결정례, 일반논평, 최종견해는 일관되게 성 정체성이 국제법상 금지된 차별 근거라고 밝혀왔다. 예를 들어, 사회권규약위원회는 사회권규약 제2조 제②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 근거로서[에] 성 정체성이 인정[포함]됨을 확립했다(E/C.12/GC/20, 단락 32). 위 규약위는 더 나아가 사회권규약 제2조 제②항이 일할 권리의 모든 측면에 직접적으로 적용되고, 노동자를 불법적 해고로부터 지키지 못하는 경우는 권리침해가 구성된다고 밝혔다(E/C.12/GC/18, 단락 33 및 35).

2017년 10월 19일 최종견해에서 위 규약위는 대한민국에게 남녀 동성애자, 양성애자 및 성전환자(성소수자)에 대한 법[리]적 및 사실상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효과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해당 조치에는, 여러 가지 가운데에서도, 제정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근거로 한 차별 또한 금지하도록 보장할 것이 있었다(E/C.12/KOR/CO/4, 단락 25 (c)).

대한민국이 1984년 12월 27일 비준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여성차별철폐협약) 제2조는 가입국이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규탄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을 모든 적절한 수단과 지연없이 추구할 것에 동의하고 있다. 이 측면에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일반논평 28호에서 생물학적 및 사회적 성(sex and gender)에 근거한 여성 차별은 여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 예를 들면, 성 정체성과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가입국은 그러한 교차적 형태의 차별과 그것의 관련 여성에 대한 복합적인 부정적 영향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금지해야만 한다. 각 국가는 또한 그런 일의 발생을 제거하게끔 고안된 정책과 사업을 도입하고 추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CEDAW/C/GC/28, 단락 18).

이런 면에서 우리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2018년 3월 14일 최종견해를 상기하고자 한다. 이 견해에서 대한민국은 여성에 대한 차별을, 불리한 여성 집단들에 영향을 끼치는 직간접 및 교차적 형태의 차별을 포함하여,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조의 정의와 여성차별철폐협약 제2조에 따른 가입국의 핵심 의무에 대한 위 위원회 일반논평 28호(2010)에 부합하게끔 제정할 것을 권고 받았다(CEDAW/C/KOR/CO/8, 단락 18).

우리는 자유권위원회의 2015년 12월 3일자 최종견해를 참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믿는다. 이 견해는 대한민국에게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에 근거한 그 어떠한 형태의 사회적 낙인이나 차별을 용납하지 아니한다는 바를 명시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명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 견해는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 성소수자 개인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틀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CCPR/C/KOR/CO/4, 단락 15).

인권이사회는 세계 모든 지역에서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으로 인해 개인들에게 가해지는 폭력과 차별 행동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한 바 있다(A/HRC/RES/17/19, 27/32, 32/2, 41/18).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귀하의 관심을 인권이사회에 제출된 국제연합 인권최고대표의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근거한 폭력과 차별에 대한 보고서로 가져오하고자 한다(A/HRC/19/41 및 A/HRC/29/23). 최고대표는 보고서에서 국제인권법상 국가들은 한 개인이 고용에 대한 접근 및 유지에 있어서 어

² [역자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번역본

면 형태의 차별로부터든지 보호받도록 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최고대표는 국가들이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차별금지 근거에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률을 제정하도록 권고했다(A/HRC/19//41, 단락 51-53 및 84 (e)와 A/HRC/29/23, 단락 58 및 79 (c)).

성소수자 사람들의 일할 권리는 ‘요그야카르타 원칙을 보충하기 위한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성 표현과 성징에 관한 국제인권법의 적용에 대한 추가 원칙과 국가 의무’에서도 강조된 바 있다. 원칙 12에 따르면 모든 이는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 없이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국가는 모든 필요한 입법, 행정 및 기타 조치를 취하여 공공 및 민간 채용분야에서, 특히 해고와 관련하여,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제거하고 금지하여야 한다(원칙 12 (a)).

또한, 우리는 사생활의 권리에 귀하의 관심을 바라는 바이다. 이는 세계인권선언 제12조, 자유권규약 제17조에 보장된 권리이다. 군 복무와 관련하여 사생활의 권리 특별보고관은 국가들이 성소수자(간성애자 포함) 개인들이 그들의 성 정체성이 인정(identified)되고, 군 복무가 허용되며,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보호되는 계획(protocol)을 고안하고 실행할 것을 권고하였다(A/HRC/43/52, 단락 37 (p)).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 귀 정부에게 비단 군대만이 아니라 보다 폭넓은 인권의 맥락에서 귀 정부가 성 정체성에 관련된 사생활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를 진다는 점을 상기해 드리고자 한다(A/HRC/RES/34/7, 단락 5 (g)). 이는 사생활의 권리가 성 정체성을 포괄한다는 국제연합 자유권위원회의 결론이다(CCPR/C119/D/)2172/2012).

성전환 사람들을 환자 취급하는 것(병리화, pathologization)과 관련하여 성소수자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기초한 폭력과 차별에 대항하는 보호에 관한 독립전문가는 병리화가 공공 정책, 입법 및 법리에 깊은 영향을 주고 따라서 세계 모든 지역에서 국가 행위의 모든 영역을 관통하여 집합의식(collective conscience)에 침투한다고 지적했다(A/73/152, 단락 14). 이런 이유로 독립전문가는 국가들로 하여금 기민하게 움직여, 일상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병리로서의 성 다양성 개념을 근절하는 데 용이한 모든 조치의 도입을 포함해, 성전환 분류를 ‘정신 및 행동장애’ 장(章)에서 제거한 국제질병분류 제11판 개정본의 요소를 채택하고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같은 글, 단락 77 (a)).